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6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정연우(기소), 김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대하

판 결 선 고 202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하고, 증 제3호 중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지인 사이로, 사건 당일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5. 8. 22.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건물, △△△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앱인 '인스타그램'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이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다가 비비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아이폰)

1.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DM 및 녹취록,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선별한 영상과 피해자 동일여부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입대하여 현역 군인이므로 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 전도141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 > [제2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경모 _____